캠핑(야영)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캠핑(야영)]

주5일제의 정착과 가족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캠핑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 캠핑장이나 무허가 캠핑장도 우후죽순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콘텐츠에서는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한 예방법과 분쟁해결방법에 대해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핑과 레포츠 활동 시 필요한 주의사항과 에티켓 등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캠핑(야영) 1
1. 캠핑 계획세우기 4
1.1. 캠핑을 위한 계획 세우기 4
1.1.1. 캠핑장 선택 및 예약하기 4
1.1.2. 캠핑장 예약취소 및 환불하기 8
2. 필요물품 준비하기 13
2.1. 물품 준비하기 13
2.1.1. 장비 준비하기 13
2.1.2. 음식 등 필요물품 꾸리기 15
2.2. 자동차 이용하기 17
2.2.1. 자동차 점검하기 17
2.2.2. 자동차 빌리기 19
2.2.3.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사항 알아두기 22
3. 캠핑하기 27
3.1. 캠핑 위치 선정하기 27
3.1.1. 캠핑 위치 선정하기 27
3.2. 캠핑 중 여가즐기기 28
3.2.1. 물놀이 즐기기 28
3.2.2. 레포츠 즐기기(낚시) 30
3.2.3. 레포츠 즐기기(등산) 33
3.2.4. 레포츠 즐기기(트레킹) 37
3.2.5. 레포츠 즐기기(수상레저활동) 39
3.2.6. 자녀와 함께 체험학습하기 44
3.3. 캠핑 중 에티켓 지키기 47
3.3.1. 에티켓 지키기 47
4. 정리하기 50
4.1. 캠핑 정리하기 50
4.1.1. 정리 및 짐 꾸리기 50
4.2. 캠핑 중 분쟁이 발생한 경우 51
4.2.1. 캠핑 중 발생한 분쟁의 해결 51

1. 캠핑 계획세우기

1.1. 캠핑을 위한 계획 세우기

1.1.1. 캠핑장 선택 및 예약하기

야영장(캠핑장)

"야영장"의 개념

▪ 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함)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참고).

> ※ 청소년야영장
>
> ·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
>
> ·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범위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위해 청소년야영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2항제3호).
>
> √ 그 이용 범위(해당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청소년야영장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본문).

야영장(업)의 구분

▪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참고).

▪ 야영장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

▹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야영장은 위 업종구분과 마찬가지로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야영장 설치장소의 예시

▪ 자연휴양림

▹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자연휴양림에는 편익시설로 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함)·오토캠핑장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 제1호나목).

√ 이 경우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는 지역으로서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 제2호나목2)].

※ 국립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야영장 포함)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 해수욕장

▹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해수욕장시설에는 야영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포함됩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3) 참고).

▹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5호).

※ 이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 관리청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위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유원지

▹ "유원지"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 유원지에는 휴양시설로서 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제3호).

√ 유원지의 야영장 및 숙박시설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제7호).

야영장의 시설 및 설비 등(야영장업 등록기준)

▪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4호다목).

▹ 공통기준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함)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는 그렇지 않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일반야영장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 자동차야영장

√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함)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위에도 불구하고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3)].

▸ 공통기준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일반야영장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의 이용이 가능할 것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 자동차야영장

√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함)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것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청소년야영장의 시설기준

· 청소년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아(「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참고), 청소년야영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는 위의 등록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된 청소년야영장의 시설기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릅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7조제2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에 임시대피소를 설치해야 합니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제1항제9호).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 야업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20조의2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야영장의 등급

▪ 야영장의 등급결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본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9조제2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야영장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

▪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의 공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9조제4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9조제5항).

야영장(캠핑장) 선택·예약하기

선택·예약 시 유의사항

▪ 야영장을 예약하기 전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 예약취소나 환불에 관한 규정은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사이트를 이용해 예약하기

※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주변에 있는 야영장(캠핑장)은 우리강 이용도우미 홈페이지(http://www.riverguide.go.kr)의 <캠핑·체육시설—캠핑장안내·예약>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휴양림에 있는 숙박시설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통합 홈페이지 숲나들e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huyang.forest.go.kr)의 <휴양림 이야기—휴양림 예약 및 이용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캠핑장) 또는 숙박시설에 관한 그 밖의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여행 홈페이지(http://korean.visitkorea.or.kr)나 국립공원 홈페이지(http://knps.or.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2. 캠핑장 예약취소 및 환불하기

캠핑장 예약취소 및 환불

캠핑장 운영 조례에 따른 취소 및 환불

▪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 중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곳에서는 이 조례에서 취소 및 환불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의 취소 및 환불 예시는[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 및 환불

-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시·군·구 중 이 조례에서 「소비자 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규정을 운영한다고 규정하는 곳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내부적인 환불규정을 확인해야 하는데, 환불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불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불기준(캠핑장은 숙박업에 따름)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8호 ①숙박업]

구 분		환급기준
성수기 주중 여름 : 7.15.~8.24. 겨울 : 12.20.~2.20.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없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성수기 주말 여름 : 7.15.~8.24. 겨울 : 12.20.~2.20.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 환급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 환급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8호 ①숙박업)

구 분		환급기준
성수기 주중 여름 : 7.15.~8.24. 겨울 : 12.20.~2.20.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없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성수기 주말 여름 : 7.15.~8.24. 겨울 : 12.20.~2.20.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계약금 환급

▹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8호 ①숙박업)

구분		환급기준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시	위약금 50% 감경

2. 필요물품 준비하기

2.1. 물품 준비하기

2.1.1. 장비 준비하기

캠핑용품의 선택 및 구입

기본적인 캠핑 도구의 구입

▪ 캠핑 도구에는 텐트와 침낭, 매트, 스토브, 코펠 등과 같은 조리도구, 릴선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장비 외에도 난로, 침상, 의자, 키친테이블, 그릴 등 많은 장비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용품만 갖춰 캠핑을 시작하고 캠핑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비를 점차 구입해 가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텐트 고르기**

- 캠핑의 성격에 따라 텐트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캠핑 인원과 목적에 따라 텐트크기를 결정하면 됩니다.

· 중형 텐트(터널 및 돔형 텐트) 중 1~2인용이나 3~4인용은 차량 없이도 휴대가 가능하지만 6~7인용 이상의 제품은 다른 장비들과 함께 휴대해야 하는 캠핑 여행의 특성상 차량이 없으면 운반하기가 힘듭니다.

· 누르거나 공중에 던지면 자동으로 펼쳐지는 자동식 텐트는 설치와 해체가 편리하지만 일반 텐트에 비해 바람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 대형 텐트(캐빈형)는 공간이 넓어 5인 이상의 오토캠핑 또는 단체 여행에 적당한데 무게가 무거워 차량이 있어야 운반이 가능하고, 중형 텐트에 비해 설치가 불편하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 최근 오토캠핑을 즐기는 캠퍼들은 리빙셸이라고 부르는 대형 텐트를 설치한 후 그 안에 크기가 작은 이너텐트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닥 천이 없는 리빙셸은 거실이나 주방으로, 이너텐트는 침실로 활용할 수 있어 가족단위 오토캠핑에 적당합니다. 그러나 리빙셸, 이너텐트, 그늘막(타프)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제품은 사용이 편리하지만 가격이 고가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 그늘막(타프)은 뜨거운 태양이나 비를 막을 수 있는 방수포를 말하는데, 텐트 앞에 쳐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사각형인 렉타타프는 그늘의 면적은 넓지만 바람에 약하고 육각형인 헥사타프는 바람에는 강하지만 그늘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으므로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침낭과 매트리스 고르기**

- 캠핑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잠자리이므로 밤의 찬 공기와 딱딱한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침낭과 매트리스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 침낭은 거위털과 오리털을 사용한 제품이 보온성이 좋은데, 겉감이 나쁘면 털이 잘 빠지므로 소재가 좋은지, 재봉질은 꼼꼼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매트리스는 발포 매트리스와 공기주입식 에어 매트리스가 있는데, 발포 매트리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이 쉬운 반면, 에어 매트리스는 발포 매트리스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효과적으로 막아주므로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2009. 8.), 상품 구매 가이드, 캠핑용품 >

캠핑용품의 교환 및 환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결

▪ 큰 맘 먹고 캠핑용품을 구입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속상하겠죠? 사기 전에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구입한 후에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판매자와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좋겠으나 교환이나 환불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참조).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 캠핑용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Ⅰ. 상품(재화), 제4호 ④스포츠·레저용품].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환급기준</th></tr>
<tr><td colspan="3">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td><td>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td></tr>
<tr><td rowspan="4">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td><td rowspan="3">품질보증기간 이내</td><td>하자 발생 시</td><td>무상수리</td></tr>
<tr><td>수리 불가능 시</td><td>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td></tr>
<tr><td>교환 불가능 시</td><td>구입가 환급</td></tr>
<tr><td>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td><td>구입가 환급</td></tr>
<tr><td>품질보증기간 경과 후</td><td>수리 불가능 시</td><td>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td></tr>
<tr><td colspan="2" rowspan="2">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td><td>품질보증기간 이내</td><td>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td></tr>
<tr><td>품질보증기간 경과 후</td><td>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을 10% 가산해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td></tr>
<tr><td colspan="2" rowspan="3">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td><td>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td><td>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td></tr>
<tr><td>품질보증기간 이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td><td>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td></tr>
<tr><td>품질보증기간 경과 후</td><td>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td></tr>
</table>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한 하자로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2.1.2. 음식 등 필요물품 꾸리기

식중독 등의 예방 및 대처방법

식중독의 예방

▪ 캠핑을 갈 때 준비해야 할 물품 중 음식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음식을 잘못 보관해 가져간다거나, 캠핑을 하며 발견한 주위의 버섯이나 낚시를 한 생선 등을 잘못 먹는다거나 하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식중독"이란 ?

▹ 식품 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

부패한 식품으로 식중독에 걸린 경우의 대처방법

▪ 부패한 식품으로 식중독에 걸린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제3호).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6조제1항).

√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수거·파기 등의 권고(「소비자기본법」 제49조)

√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수거·파기 등의 명령(「소비자기본법」 제50조)

√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소비자기본법」 제86조제1항제1호)

√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질문) 집 앞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족발을 구입한 후, 먹는 도중 일부 고기 부분에서 대량의 곰팡이를 발견했고, 섭취 후 3~4시간정도 지나서 복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판매처에 연락을 했더니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만 할 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복통이 심해서 일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조업체에 행정적 처벌은 가능할까요?

(답변) 우선, 소비자는 변질된 식품을 구입 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복통에 의하여 상실된 소득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 없이 ☎ 1399)나 관할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해 식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분쟁조정—피해예방·사례정보—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마트에서 판매한 상한 족발의 섭취 후 복통 발생에 대한 보상 문의” 참조>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의 대처방법

▪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함]이 발견된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제4항).

(질문) 캠핑을 가기 위해 물건을 구입했는데 요리를 하기 위해 열었더니 식품 속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질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www.kfda.go.kr)『통합민원상담서비스』나, 전국 어디서나 ☎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해 해당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 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물 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면 이물 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없이 ☎ 1372)을 하시거나 가까운 시·군·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분쟁조정—피해예방·사례정보—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이물 발견된 식품 보상 절차 문의" 참조>

2.2. 자동차 이용하기

2.2.1. 자동차 점검하기

자동차 정비받기

일반적인 자동차 관리

캠핑은 보통 자동차에 장비를 싣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물품보다도 자동차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캠핑 가기 전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 계획이 어긋난다면 그것보다 화가 나는 일은 없겠죠? 미리미리 자동차를 잘 관리해 둔다면 계획이 어긋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차량 관리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자동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 자동차의 밑바닥도 청소해 주세요.

  · 자동차의 밑바닥과 휠하우스(바퀴집)를 깨끗이 씻어주어야 부식을 막을 수 있어요.

- 환기를 자주 시켜 주세요.

  · 에어컨이나 히터는 창문을 닫고 사용하기 때문에 차 안에서 묵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날씨 좋은 날 매트를 걷어내고 트렁크를 열어 햇볕에 말리고 압축공기 청소기로 구석구석 청소해 주세요. 퀴퀴한 냄새는 사과 1~2개를 듬성듬성 잘라 놓아두면 없앨 수 있어요.

- 자동차의 뒷부분 등화장치를 점검하세요.

  ·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과 같은 앞부분의 등화장치는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제동이나 후진할 때 사용하는 뒷부분 등화장치는 이상여부를 알기 힘들어 고장이 나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개가 자욱하거나 날씨가 좋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꼭 등화장치를 점검해 주세요.

- 엔진오일을 점검해 주세요.

· 엔진오일은 온도변화나 워밍업을 하면서 점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수시로 확인하고 깨끗한 엔진오일로 갈아주세요.

< 교통안전공단 공식블로그 자동차안전지킴이, “지친 내 자동차, 관리하는 방법~!” >

출발 전 차량점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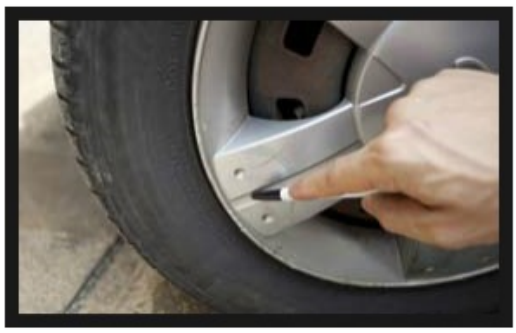
▪ 캠핑을 가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발 전 자동차를 점검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럼 출발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 캠핑 떠나기 전 체크해 주세요.

- 타이어 점검하기

·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수막현상이나 급제동으로 인해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야 해요.

· 타이어 교체 시기는 타이어 둘레로 나 있는 화살표 곁트레드 홈을 살펴보면 마모 한계선이 있는데 이 마모 한계선이 타이어 표면을 넘어서면 위험하므로 미리미리 확인해 교체하는 것이 좋아요.



- 자동차 오일 점검하기

· 자동차에 쓰이는 오일은 엔진오일, 기어오일, 브레이크 오일, 파워핸들 오일 등 다양합니다. 오일은 각각의 장치들을 부드럽게 작동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므로 종류가 많더라도 교체주기를 체크해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 자동차 배터리 점검하기

·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면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해요.

· 자동차가 ① 시동음이 둔탁하거나 약해지는 경우, ② 엑셀을 밟는 정도에 따라 헤드라이트의 밝기가 변하는 경우, ③ 경음기 소리가 작아지는 경우, ④ 충전을 시켰을 때 배터리 인디케이터에 녹색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 등에는 배터리를 교체해 주어야 해요.

- 돌발사고를 대비한 차량 상비 용품 점검하기

· 고속도로에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물론, 2차 사고까지도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 등에 대한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돌발사고를 대비한 차량 상비 용품을 점검해야 합니다.

· 돌발사고를 대비해 안전삼각대, 예비타이어, 플래시 등을 준비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교통안전공단 공식블로그 자동차안전지킴이, “귀성길 고속도로 운전, 초보 운전자도 할 수 있어요!” >

※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한 고장 등의 조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교통·운전,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하기,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의사항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점검 및 타이어 및 엔진오일 교체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교통안전공단 공식블로그 자동차 안전 지킴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자동차 빌리기

자동차 대여 시 확인사항

"자동차 대여(렌터카)"란?

▪ “자동차 대여”란 필요에 의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참조).

※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참조).

등록된 대여업체인지 확인할 것

▪ 자동차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대여를 하기 전 등록증을 통해 등록이 되어 있는 합법적인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할 것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약관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대여를 하기 전 약관을 통해 대여 및 반환조건, 비용,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대여약관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

-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 대여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해 필요한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자동차대여업에서 사용할 표준약관을 작성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 확인해야 하는 대여약관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4호, 2021. 10. 29. 발령·시행)에 비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작성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렌터카 이용 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사고 후 면책금(자기부담금) 등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 자동차를 운행하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렌터카로 사고를 내면 자기부담금이나 휴차손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부담금이나 휴차손해금과 관련한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대부분 렌트카 회사들은 대인·대물·자손에 대한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차량을 대여한 소비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별도의 보험비용을 내야 하므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트를 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막대한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꼭 가입하도록 하세요.

· 자기차량손해보험의 가입 후에도 자기부담금(면책금)을 내도록 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대여 전 미리 확인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세요.

-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기준에 대해 확인하세요.

· 대부분의 경우 약관에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얼마나 환급해 주는지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미리 확인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하고, 대여기간 중에도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대여요금 10%를 공제한 후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보다 불리한 조건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 렌트차량 인수인계 시 차량상태 및 주유량을 꼭 확인하세요.

· 자동차를 인수받을 때 차량외관에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주유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대여업체와 정확하게 체크해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 후 인도를 할 때 훼손하지도 않은 부분을 훼손했다고 하거나 주유량이 적다는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차량 렌트 시 주의하세요” >

자동차대여업체와 분쟁발생 시 해결방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결

▪ 자동차대여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자동차대여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6호 ①자동차대여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대여 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소비자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소비자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대여개시일 당일(인도 이전) 차량하자로 사용불가능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시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 차량대여 하루 전 취소한 렌터카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질문) 렌터카를 3일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용하기 전날 밤 일행 중 한 명이 상(喪)을 당해 부득이 계약취소를 하게 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네,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②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분쟁조정—피해예방·사례정보—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차량대여 하루 전 취소한 렌터카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참조 >

※ 차량 대여기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질문) 캠핑을 위해 차를 렌트해 가던 중 운전부주의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차를 빌린 사람(임차인)이 차량수리비와 휴차(休車)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상 대여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 중 대인 및 대물보상, 자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차보험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1조제2항).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사고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렌터카 계약 시 반드시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분쟁조정—피해예방·사례정보—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차량 대여기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참조 >

※ 대여기간 중 차량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질문) 승합차를 렌트해 2박 3일로 강원도로 친구들과 캠핑을 갔는데, 가는 도중 미시령 부근에서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있습니다. 대체 렌터카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 전의 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20조제3항).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분쟁조정—피해예방·사례정보—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참조 >

2.2.3.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사항 알아두기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운전 중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시동이 꺼지거나 전조등이 켜지지 않는 등 돌발 상황과 대면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를 해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돌발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 갑자기 시동이 꺼졌을 때

  ·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 먼저 비상등을 켜고 다른 차량에게 긴급 상황임을 알려야 해요. 그런 다음 기어를 1단이나 2단에 놓고 시동을 걸면 스타팅 모터의 힘으로 10m 정도는 음직일 수 있으니 자동차를 길 가장자리로 옮기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거나 견인차를 부르세요.

  · 배터리의 방전으로 시동이 꺼진 경우에는 다른 차량에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점프 케이블이라는 배터리 연결용 전선으로 다른 차의 전원을 끌어와 시동을 걸 수 있어요.

-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때

  · 주행 중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경우에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일 때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면 도로 측면이나 가드레일에 살짝 부딪쳐 가면서 속도를 줄여주세요. 속도가 충분히 감속되었다면 주차브레이크를 사용해 차량을 정지시키면 됩니다.

· 주차브레이크는 차량의 회전에 의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속도가 충분히 감속된 상태에서만 작동시켜야 함을 잊지 마세요.

- 전조등과 와이퍼가 고장 났을 때

· 전조등과 와이퍼의 고장은 일반적으로 퓨즈가 끊어져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예비 퓨즈를 규격별로 2~3개 정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비가 오는 날 와이퍼가 고장 났다면 담뱃가루나 물기가 많은 나뭇잎으로 자동차 앞 유리를 닦아주면 빗물이 흐르지 않고 맺히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임시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요.

< 교통안전공단 공식블로그 자동차안전지킴이, “운전 중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장거리 운전을 위한 주의사항

장거리 안전 운전을 위한 주의사항

▪ 캠핑은 주로 산이나 바다 등에서 하기 때문에 도심에 사는 사람은 장거리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하게 캠핑장에 도착하기 위해 장거리 안전 운전방법을 알아두면 좋겠죠? 함께 알아볼까요?

※ 장거리 안전운전 요령을 알아두세요~~

- 나에게 알맞은 운전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 엉덩이를 시트 깊숙이 밀어 넣고 앉아 발로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이 약간 굽혀지는 정도로 의자를 맞추고, 등받이는 양팔을 쭉 뻗었을 때 팔목이 핸들의 가장 먼 곳에 닿을 정도나 허리 통증 예방에 좋다는 100도로 조정하세요.

- 운전 중 DMB 시청 및 핸드폰 사용은 안돼요~~

· 운전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함)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않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

√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 위 사항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차량 내부 환기를 자주하고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 졸음운전은 안전운전의 최대의 적입니다. 장거리 운전 시에는 답답해진 실내 공기와 교통정체로 정신이 몽롱해지고 졸음이 쉽게 올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고 휴식을 취할 때마다 목이나 다리 등 운전으로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도록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 주세요.

- 과속운전은 절대로 안돼요~~

·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매시 100킬로미터 이내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장거리 운전에 지치고 정체를 경험하게 되면 누구라도 빨리 달리고 싶겠지요. 그렇다고 과속을 하면 교통사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니 자제해 주세요.

- 동승자는 운전자의 든든한 네비게이터가 되어 주세요.

·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지, 과속이나 졸음 운전을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며 도움을 주는 것이 동승자의 매너겠죠? 장거리 운전 시에는 운전자가 지치지 않도록 대화를 걸어주고, 라디오나 네비게이션을 작동시켜주는 등 동승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 차에는 비상 구급약이나 비상용품을 구비해 두세요.

· 혹시 모를 비상상황에 대비해 차량 내에 소화제, 진통제, 멀미약 등 간단한 구급약을 구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그 외에도 안전삼각대, 플래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용품을 마련해 두면 좋습니다.

< 교통안전공단 공식블로그 자동차안전지킴이, “장거리 운전을 위한 안전수칙, 장거리 안전운전 10계명” >

※ 상황 및 계절에 따른 안전운전 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교통안전공단 공식블로그 자동차 안전 지킴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사상자 구호조치

▪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함)한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 제외)를 받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취하기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아래와 같은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안전삼각대

▹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

▹ 자동차의 운전자는 위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 위 사항들을 위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 조치요령을 알아두세요.

-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키세요.

  · 사고 발생 후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어 즉시 정차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 발생 장소를 다소 벗어나는 경우에도 도주나 뺑소니 사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비상등을 켜고 다른 차량과의 충돌에 주의하면서 사고 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에 정차하세요.

- 2차 사고에 주의하세요.

  · 차량의 통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사고 상황의 확인이 어려운 심야, 커브 도로 뒤편, 터널 안 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지점 후방에 경고등이나 안전 삼각대(주간 100m, 야간 200m 이상)를 정차한 차량의 동일 차로 후방이나 상황에 따라 갓길 또는 길 어깨에 설치해 주세요.

  · 또한 신호봉이나 옷(수건) 등을 상하로 흔들어 위험상황을 적극 알려야 합니다. 동승자는 가드레일 뒤편 등의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 해요.

-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구호조치를 취하세요.

  · 상대 차량의 탐승자 또는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하세요. 부상자를 차량에서 나오게 하거나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는 등의 행위는 부상 부위를 자극해 악화시킬 수 있으니 상태를 확인한 후 바로 ☎ 119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사고현장 주위의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주위의 다른 차량이나 행인들에게 목격 여부를 물어보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시고, 이를 거부하면 차량번호를 기록해 두세요.

- 사고현장 촬영 등으로 현장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 현장보존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현장보존 대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현장을 찍어 증거를 확보해 두면 됩니다.

· 사고 차량의 파손 부위(손상부위, 파손정도, 형태 등은 사고 차량의 속도 추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를 근접활용하고, 최종 정차위치를 원거리에서 여러 방향으로 촬영하세요. 주위의 신호등, 횡단보도 등 다른 배경이 포함되도록 하면 더욱 좋아요.

· 그 밖에 노면 위에 떨어진 차량 파편, 오일 또는 냉각수, 보행자의 가방 또는 신발 등의 위치도 촬영해 두세요.

- 보험회사나 지구대 등에 신고하세요.

·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거나 바쁘다고 해서 단순히 본인의 연락처만 건네주고 사고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보험회사나 지구대 등에 신고해 후속조치를 취해야 해요.

· 경미한 피해사고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사실관계 입증, 가·피해자가 불명확한 다툼 등에 대비해 사고 사실을 객관화해 둘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해요.

< 교통안전공단 공식블로그 자동차안전지킴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현장 조치요령 10계명”>

※ 교통사고 발생 및 조치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교통·운전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캠핑하기

3.1. 캠핑 위치 선정하기

3.1.1. 캠핑 위치 선정하기

텐트 칠 장소 선정하기

텐트를 칠 장소 선정하기

▪ 캠핑장 및 야영장 등에 도착하면 텐트를 치는 등 야영 준비를 해야 하는데, 화장실·샤워실이나 취사장과 같은 부대시설과 가까이에 자리를 잡는 것이 좋겠죠? 또한 내린 짐 등은 쓰기 쉽고 찾기 쉽도록 미리 정리를 해두는 센스도 필요하답니다.

▪ 캠핑장이나 야영장이 아닌 산이나 계곡 등에 텐트를 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야영을 할 수 없으므로 야영금지구역이 아닌지 먼저 확인하세요.

-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정함)[「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호]
-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6호)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해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제2호)
-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호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4호)
-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 및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주차장법」 제6조의3)

> ※ 텐트를 칠 때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장소, 자연재난으로 인해 대피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자연재난으로 대피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캠핑 정리하기, 정리 및 짐 꾸리기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가 장소와 가까운 위치 선정하기

캠핑과 함께 즐길 레포츠 위치와 가까운 곳에 자리 잡기

▪ 캠핑을 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로는 수상레포츠, 육상레포츠, 항공레포츠가 있습니다. 캠핑위치를 선정할 때 어떤 레포츠를 즐길지 미리 결정해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류	내용
수상레포츠	래프팅, 민물낚시, 바다낚시, 수영장, 스노쿨링/스킨스쿠버 다이빙, 요트, 윈드서핑/제트스키, 카약/카누
육상레포츠	ATV/카트/오프로드/자동차경주, 경기장, 경마/경륜, 골프, 번지점프, 서바이벌게임, 수련시설, 수렵장/사격장, 스케이트, 스키(보드)레탈샵, 스키/스노보드, 스포츠센터, 승마, 썰매장, 암벽등반/빙벽등반, 인라인, 자전거하이킹/MTB, 트래킹
항공레포츠	스카이다이빙, 열기구, 초경량비행, 헹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
캠 핑	야영장/오토캠핑장

<출처: 한국관광공사(www.visitkorea.or.kr)>

3.2. 캠핑 중 여가즐기기

3.2.1. 물놀이 즐기기

물놀이 안전수칙

물놀이 전 주의사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물놀이 금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7조제1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영, 목욕, 야영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가 금지되므로(「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 및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물놀이를 하려는 곳이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물놀이 뿐만 아니라 세탁, 야외 취사행위 등도 금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 오염된 하천 등에서의 물놀이 금지

▹ 하천 등이 오염되어 수영 등의 물놀이를 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구역 내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하천 등에서 수영 등의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므로(「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참조), 물놀이를 하려는 곳에 이런 안내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사항

·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물놀이는 물 깊이가 배꼽 아래까지 오는 곳에서 합니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열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가세요.

· 물놀이 중 비가 오거나 천둥, 번개가 치면 물에서 즉시 나와야 합니다.

· 음식물을 먹은 직후 바로 물에 들어가거나 음주 후에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 물놀이 도중 소름이 돋고 피부가 땅기거나 몸이 떨리고 입술이 파래지면 물놀이를 중단하고 옷이나 타월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합시다.

· 수영을 할 때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먹으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합시다.

< 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 배움터, 여름철 안전 >

물놀이 사고 대처방법

경련이 난 경우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물놀이 도중 경련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 힘을 빼고 몸을 둥글게 오므려서 물 위에 뜨도록 해야 해요.

·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물속에 얼굴을 넣은 채 쥐가 난 쪽의 엄지발가락을 힘껏 앞으로 꺾어서 잡아당겨요. 한동안 계속하면서 격통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세요.

· 한 번 쥐가 난 곳은 버릇이 되어 다시 쥐가 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증이 가셨을 때 잘 마사지하면서 천천히 육지로 가야 해요.

· 육지에 오른 다음에도 발을 뻗고 장딴지 근육을 충분히 마사지해 주세요.

· 타월에 더운 물을 적셔서 장딴지에 감아주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정보마당, 안전자료, 물놀이 안전 >

물에 빠진 경우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물놀이 도중 물에 빠지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 물에 빠지면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몸에 힘을 빼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발이 바닥에 닿으면 팔을 아래로 내리고 발바닥으로 물을 누르듯 치면서 올라와 숨을 들이마셔요.

· 머리가 부분적으로 물 밖으로 나올 때, 팔을 벌리고 동시에 마치 가위질을 하듯 양다리를 젓도록 해요.

· 옷이 물에 젖으면 무거워서 가라앉기 쉬우므로 옷을 입고 물에 빠진 경우에는 침착하게 신발과 옷을 벗도록 노력해야 해요.

· 셔츠나 바지의 밑자락을 묶어 공기를 넣고 단단히 움켜잡으면 튜브 역할을 해 물에 뜰 수 있어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정보마당, 안전자료, 물놀이 안전 >

주변 사람이 물에 빠진 경우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이렇게 해야 해요~~

· 즉시 큰 소리로 인명구조요원과 어른에게 알리고 119에 신고하세요.

·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고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마세요. 인명 구조 자격이 있는 사람만 수영으로 구조할 수 있어요.

· 레스큐 튜브, 구명조끼 등을 던져주세요. 튜브가 없는 경우, 윗도리, 바지, 넥타이 등을 묶어 하나의 줄 형태로 연결한 후 주변에 음료수 PET병이나 물에 뜰 수 있는 슬리퍼를 끝에 묶어서 던져주면 잡고 나오기가 쉬어요.

·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 뒤에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젖은 옷을 벗기고 옷이나 수건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감싼 후 마사지 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정보마당, 안전자료, 물놀이 안전 >

3.2.2. 레포츠 즐기기(낚시)

낚시하기

"낚시"란 ?

▪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해 어류·패류·갑각류, 연체동물 중 두족류,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조).

낚시할 경우의 유의사항

낚시통제구역인지 확인할 것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1항 후단).

▪ 낚시통제구역에 대한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3항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4조).

√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외)

√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 낚시통제구역에 대한 표시

▹ 낚시통제구역에는 낚시통제구역에 대해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3항).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

※ 낚시통제구역 지정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제2조제2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군·구의 낚시통제구역지정 및 기간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1항제1호).

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

▪ 누구든지 바다,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사유수면(私有水面), 육상(陸上)의 해수면,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조 및 제7조).

▹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해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 “낚시제한기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해 마련한 기준을 말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제1항).

※ 낚시제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사람,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린 사람 및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안전조치에 따를 것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기상악화 등과 같이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제1항).

-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낚시인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제1항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6조).

- 호우·대설·폭풍해일·태풍·강풍·풍랑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기피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2항제1호).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하지 말 것

▪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이하 “유해 낚시도구”라 함)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제1항 본문).

> ※ 낚시도구의 유해물질 허용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제1항제1호).
-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1항제6호).

안전한 미끼를 사용할 것

▪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하 “미끼기준”이라 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0조제1항).

> ※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5>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1조).

▪ 위반 시 제재

▹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1항제19호).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의2).

▪ 위반 시 제재

▹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1항제5호).

3.2.3. 레포츠 즐기기(등산)

등산하기

"등산"이란 ?

▪ “등산”이란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호 참조).

등산할 경우의 유의사항

입산통제구역은 아닌지 확인할 것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제외)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의 설치

▹ 입산통제구역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산림보호법」 제15조제2항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입산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의 지정사유

√ 산림 소재지

√ 구역면적

√ 입산통제기간

√ 지정 연월일

√ 그 밖에 입산통제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

▪ 입산통제구역 출입허가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 포함)는 입산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본문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 포함)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제1호).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

▪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

▪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 내 보전·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합니다(「산림보호법」 제2조제2호).

▪ 산림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 산림보호구역(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 제외) 안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 가축의 방목

√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산림보호법」 제54조제2항제1호).

▹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산림보호법」 제54조제2항제2호).

▹ 허가 없이 굴취·채취된 임산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산림보호법」 제55조).

▹ 상습적으로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산림보호법」 제54조제7항).

※ 자연공원 내 흡연과 음주 제한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합니다(「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9호 및 제86조제1항제5호).

또한, 자연공원 내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등에서의 음주도 금지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10호, 제86조제3항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림보호법」 제16조).
  -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해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제1호).
  -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제2호).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보호종(버섯 등)을 채취하지 말 것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후변화, 산림재난,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문화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을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함)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습니다(「산림보호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보호종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등 입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 누구든지 보호종을 벌채·굴취·채취·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림보호법」 제18조의3제1항).
- 보호종을 굴취·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림보호법」 제18조의3제2항 본문).
- 위반 시 제재
  - 허가 없이 보호종을 벌채·굴취·채취·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산림보호법」 제54조제2항제3호).
  - 허가 없이 보호종을 벌채·굴취·채취·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사람으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습니다(「산림보호법」 제54조제6항).
  - 허가 없이벌채·굴취·채취·손상된 보호종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산림보호법」 제55조).
  - 상습적으로 허가 없이 보호종을벌채·굴취·채취·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산림보호법」 제54조제7항).

산불을 낼만한 행위를 하지 말 것

▪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4조제1호, 제18조제1항,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제2호).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봄철 산불조심기간(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 등을 지니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4항).

▪ 다음의 경우 또는 장소에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할 수 있습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2항,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2조).

-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제거
  - √ 산림병해충 방제
  - √ 학술연구조사
  - √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위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위의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사람은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3항).
- ① 청소년야영장(「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 야영장(「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 ②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장(야영데크 포함), 오토캠핑장, 취사장, ③ 숲속야영장 및 숲경영체험림에 설치된 일반야영장(야영데크 포함), 자동차야영장, 속의 집, 취사장

▪ 위반 시 제재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은 7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제3항).
-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사람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산림보호법」 제53조제1항).

√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산림보호법」 제53조제6항).

▹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4항).

3.2.4. 레포츠 즐기기(트레킹)

트레킹하기

"트레킹"이란 ?

▪ “트레킹”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호).

▹ 둘레길 :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 트레일 :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해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숲길"이란 ?

▪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 포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트레킹을 할 경우의 유의사항

휴식년제인 숲길인지 확인할 것

▪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해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휴식년제인 숲길에 대한 고시(告示)

▹ 휴식년제가 실시되는 숲길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고시되므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먼저 확인하고 찾아가는 것이 좋겠지요?

√ 숲길의 명칭

√ 숲길의 위치 및 면적

√ 숲길의 출입 제한 또는 금지기간

√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 실시의 목적

√ 대체 숲길의 이용 안내

√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휴식년제인 숲길의 공지

▹ 숲길관리청은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재해 또는 안전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 휴식년제인 숲길의 출입허가

▹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가 실시되는 숲길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본문).

▪ 위반 시 제재

▹ 허가를 받지 않고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제5호).

숲길 예약탐방제

▪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날짜, 이용 경로 등을 예약하여 숲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탐방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제2호).

▹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 오물·쓰레기를 버리거나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린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지정산림문화자산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지정산림문화자산"이란 ?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 유형산림문화자산 : 토지·숲·나무·건축물·목재제품·기록물 등 형체를 갖춘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 무형산림문화자산 : 전설·전통의식·민요·민간신앙·민속·기술 등 형체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예술적·역사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 지정산림문화자산 훼손행위 시 제재

-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태워 없앤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 집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截取)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거나, 절취하거나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하려고 한 미수범은 처벌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제6항).
-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표지 등을 손상,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없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제2호).
- 과실로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제1호).

※ 산불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하세요.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사회재난행동요령, 화재·산불 >

※ 산림청장은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등산지식, 트레킹가이드, 숲길 예약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www.kmsc.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5. 레포츠 즐기기(수상레저활동)

수상레저활동 즐기기

"수상레저활동"이란 ?

▪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

▪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2호).

▪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동력수상레저기구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구분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

▹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다음과 같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수상오토바이
2. 모터보트
3. 고무보트
4.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함)
5. 스쿠터
6.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
7. 수륙양용기구
8. 그 밖에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추진기관 또는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

▹ 무동력수상레저기구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외의 수상레저기구로서 다음과 같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1. 수상스키(케이블 수상스키를 포함)
2. 파라세일
3. 조정
4. 카약
5. 카누
6. 워터슬레이드
7. 수상자전거
8. 서프보드
9. 노보트
10. 무동력 요트
11. 윈드서핑
12. 웨이크보드(케이블 웨이크보드를 포함)
13. 카이트보드

14.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15. 플라이보드

16. 패들보드

17. 그 밖에 1.부터 16.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또는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활동 시 유의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아닌지 확인할 것

▪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포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

업체 이용 시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것

▪ 수상레저기구를 빌리거나 업체가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에 탑승하는 레저를 즐기려는 경우 이 업체가 수상레저사업등록을 완료한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 참조). 등록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 위반 시 제재

▹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제6호).

업체 이용 시 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할 것

▪ 수상레저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2항), 이용 전 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상레저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1조).

▹ 가입기간: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수상레저사업에 종하는 사람이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를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한 경우 5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

> ※ 부상내용에 따른 보험금 한도금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1천만원부터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 후유장애의 내용에 따른 보험금 한도금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명안전장비에 관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장비를 착용하면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구명조끼

√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해 주는 장비)] 착용

√ 워터슬레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경우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 착용

▪ 위반 시 제재

▹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2호).

운항규칙을 지킬 것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운항방법, 기구의 속도 및 운항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 ※ 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1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3호).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시 신고할 것

▪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제1항 본문).

▪ 위반 시 제재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5호).

무면허로 조종하지 말 것

▪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본문).

▪ 위반 시 제재

▹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제2호).

▪ 다만, 1급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허가나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과 동승해 조종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단서).

야간에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말 것

▪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제1항).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한 구역에 대해 해가 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에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제2항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간을 조정한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제3항).

▪ 위반 시 제재

▹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음주를 한 상태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말 것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함)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제3호).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의2).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술에 취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제2항 전단).

- 경찰공무원
-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관계공무원의 측정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제2항 후단).

- 위반 시 제재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관계공무원의 측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사람(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제4호).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 사람(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의3).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말 것

▪ 누구든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조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 위반 시 제재

- 약물복용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제5호).
- 약물복용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의4).

3.2.6. 자녀와 함께 체험학습하기

농어촌마을에서 체험하기

"농어촌체험학습"이란 ?

▪ “농어촌체험학습”은 농어촌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생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참조).

농어촌체험학습의 취지

▪ 농어촌에서의 체험학습은 농어촌을 방문해 지역의 자연 속에서 음식만들기, 농부체험, 수확체험 등을 하며 농어촌과 자연의 소중함을 깨우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 현재 운영 중인 농어촌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정보화마을에서 운영 중인 인빌체험(www.invil.org)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웰촌(www.welchon.com) 에서도 농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의 의무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함)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를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호).

▪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에서 정하는 사항의 준수

※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가 위의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호).

농어촌체험마을의 감독

▪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군수 등은 농어촌체험마을사업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시장·군수 등은 농어촌체험마을사업이 안전·위생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않은 경우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시장·군수 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

농어촌체험마을의 체험비용 환불기준

▪ 농어촌체험마을의 체험비용 환불기준은 해당 마을에 따라 다르므로 각 마을에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정보화마을을 통한 예약 시에는 다음과 같이 여행사의 환불 기준에 따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Ⅰ. 상품(재화), 제8호 ③국내 여행).

유형	환불원인		환불기준
여행사 또는 체험마을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당일 체험의 경우	체험 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체험 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체험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체험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당일 체험의 경우	체험 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체험 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체험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체험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요금의 30% 배상
여행사 또는 체험마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체험자가 해지하는 경우	당일 체험의 경우 (여행전)	체험 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체험 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체험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체험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체험참가자 수의 미달로 취소된 경우 (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위약금) 배상
여행사 또는 체험마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체험자가 입은 손해배상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 체험마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체험자의 피해			체험자가 입은 손해배상
체험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 사고로 인한 피해			체험자가 입은 손해배상
여행사 또는 체험마을의 고의·과실로 인해 체험 일정이 지연된 경우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과실 포함)			체험자가 입은 손해배상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50% 감경

3.3. 캠핑 중 에티켓 지키기

3.3.1. 에티켓 지키기

캠핑 중 에티켓 지키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 캠핑장이나 야영장 등 텐트를 치는 곳은 공공장소이므로 사용한 후 발생한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장에 처리를 하거나, 모두 수거해 집으로 가져온 후 처리를 해야 하겠지요?

▪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노상방뇨 등을 하지 않기

▪ 텐트를 친 곳이 캠핑장 등에 비치된 화장실과 멀다는 이유로 노상방뇨를 하거나 아무 곳에나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지키도록 지도해 주세요.

▪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 캠핑을 가는 이유는 자연 속에서 쉼을 얻고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인데 함부로 훼손하면 다음에는 그 자연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캠핑을 하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해서 자연을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5호).

불안감 조성하지 않기

▪ 캠핑장에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좋은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서거나 그 밖의 여러 이유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하고 시비를 거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캠핑을 즐기려는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이니 하지 말아야겠죠?

▪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9호).

-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소란한 행동 하지 않기

▪ 캠핑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악을 듣는 것은 좋으나 다른 사람의 캠핑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행동이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0호).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모닥불 등을 피울 때 조심하기

▪ 캠핑을 하면 텐트 근처에서 불을 피우게 되는데요, 건조한 기간에는 쉽게 불씨가 날아가거나 옮겨붙어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자연을 유지해야 좋은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2호).

물건 던지기 등과 같은 위험한 장난 하지 않기

▪ 캠핑을 하면서 공을 주고받는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이런 저런 장난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이 때 주의하지 않고 공이나 물건을 던진다던지 장난으로 새총이나 비비총을 쏘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맞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3호).

과다한 노출을 하지 않기

▪ 캠핑은 가족단위로 많이 가는데, 너무 심하게 노출을 한 상태로 돌아다니면 다른 가정의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즐기는 자유가 멋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

폭죽 등을 터트리지 않기

▪ 캠핑장이나 바닷가 등 텐트가 많이 쳐진 곳에서 폭죽을 많이 터트리는데요, 폭죽은 소리가 커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잘못 발사되면 사고의 위험도 크니 되도록 하지 말아 주세요.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8호).

※ 폭죽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지켜 주세요~~

- 주의사항과 지시사항을 읽고 따라야 합니다.
- 사용하는 모든 폭죽은 어른이 책임감 있게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 어린이가 가지고 놀거나 불붙이는 행위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폭죽에 불붙이기 전에 주변에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절대로 사람을 향하여 폭죽을 터트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 반드시 집, 마른 잎, 불타기 쉬운 물질에서 멀리 떨어진 평평한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번에 하나의 폭죽만 불붙이고 불붙인 즉시 뒤로 물러납니다.
- 폭죽을 제조나 개조하지 않고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 완전히 작동하지 않은 폭죽을 다시 불붙이지 않습니다.
- 폭죽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거나 금속이나 유리상자 내에서 터트리지 않습니다.
- 오작동하거나 화재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가까운 곳에 물통이나 호스를 준비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안전자료, 안전캘린더 7월, 폭죽사고 참조 >

4. 정리하기

4.1. 캠핑 정리하기

4.1.1. 정리 및 짐 꾸리기

짐 정리 및 짐 꾸리기

쓰레기 정리하기

▪ 캠핑을 끝내고 정리를 하다보면 많은 쓰레기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다음에도 즐거운 캠핑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쓰레기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짐 꾸리기

▪ 지금 당장은 귀찮아도 다음에 다시 캠핑을 떠나려면 캠핑 장비를 꼼꼼히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텐트나 매트, 조리기구 등은 다시 펼쳐서 사용하기 좋게 다음 캠핑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자연재난으로 대피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정리하기

"자연재난"이란 ?

▪ “자연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참조).

대피명령

▪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함,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 전단).

▪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

강제대피조치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제1항).

통행제한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구조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해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제1항).

자연재난으로 대피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짐정리하기

▪ 폭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급박한 상황이라면 짐에 미련을 두지 말고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짐을 담아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 ※ **산에서 캠핑할 때의 주의사항**
>
> · 야생동물이나 곤충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고, 뱀 등이 나타나면 절대로 공격을 하면 안돼요.
>
> · 계곡에서 캠핑할 때는,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려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물 가까이 텐트를 치지 않아요.
>
> ·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바닥이 평평해야 하며, 뒤에 암벽이나 언덕이 없어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에 텐트를 쳐요.
>
> · 벌레에 물리면 비눗물로 즉시 씻고,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발라 주세요.
>
> · 휴대용 랜턴, 라디오, 밧줄(로프), 구급약품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해요.
>
> · 호우주의보 발령 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기상상태를 주시하세요.
>
> · 등산 중일 때에는 빨리 하산하거나 급히 높은 지대로 피신하되, 물살이 거센 계곡을 절대로 건너지 마세요.
>
> · 야영 중에 물이 밀려들 경우에는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말고** 신속히 대피해야 해요.
>
> · 집중호우 시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교량)는 건너지 마세요.
>
> <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예방대비, 국민행동요령, 생활안전행동요령 >

> ※ 그 밖에 자연재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국가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캠핑 중 분쟁이 발생한 경우

4.2.1. 캠핑 중 발생한 분쟁의 해결

캠핑을 하던 개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형사고소를 통한 해결

▪ 캠핑을 하던 중 개인들 간에 시비가 생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참조).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검색).

▹ 현재의 형사소송에서 기소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사뿐입니다(기소독점주의).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검색).

▪ 고소의 방식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참조).

▪ 고소의 처리

- 검사가 고소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 ※ 고소의 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신고, 고소 및 고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50조),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민사소송의 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나홀로 민사소송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 사업자 등과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참조).

▪ 상담하기

- 상담 신청은 전화(국번없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상담신청 참조].

▪ 해결방법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관광불편신고를 통한 해결

▪ 관광을 위한 시설(수단)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불친절 등 관광불편사항을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관광공사(https://knto.or.kr)-국민참여-관광불편신고].

▪ 신고방법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 관광불편신고 → 신고하기
- 전화: 국번없이 1330
- 팩스: 033-738-3734

- 이메일: tourcom@knto.or.kr
- 우편: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10

※ 여행사 이용 중 불편을 겪은 경우(여행사의 계약불이행 등 불편사항에 대한 조정 및 중재)는 여행불편처리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중 피해에 대한 환불 또는 보상을 원하는 경우(항공, 숙박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참조: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https://knto.or.kr/TouristComplaint)].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50조),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